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54

발의연월일: 2020. 8. 19.

발 의 자: 허은아 · 김기현 · 이명수

한무경・황보승희・권영세

배현진・송언석・金炳旭

이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동물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되지 아 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 유자등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과대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7조의6 및 제4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코 드, 질병진료비 및 질병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6(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 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진료항목별로		
	<u>질병명, 질병코드, 질병진료비</u>		
	및 질병별 진료행위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u>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의 진료항목 표준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u>있다.</u>		
<u><신 설></u>	제17조의6(동물의 진료항목 표준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동물		
	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		
	에 방문한 「동물보호법」 제2		
	조제3호의 소유자등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u>다.</u>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u><신 설></u>

6. ~ 9. (생략)

③ (생략)

레/11 ㅈ/	(과태료)	\bigcirc	(처 채 元	가스)
세41소((바대뇨)	(1)	(연 앵 과	イデー

- 2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6. ~ 9.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로 고지한 자